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특화분야) 사내벤처팀 모집공고

운영기업에서 발굴·육성 중인 사내벤처팀의 성공적인 분사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특화분야)』 사내벤처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사내벤처팀장)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예비창업패키지(특화분야)」 '협약체결 약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운영기업* 역량을 활용하여 사내벤처팀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운영기업) 개방형 혁신을 위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여 사업화 및 분사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지원제도, 인력, 자원 등을 보유한 기업(기관)

- 지원대상** : 운영기업에 재직 중인 사내벤처팀(예비창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예비창업패키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 선정규모** : 총 50개팀 내외

분야	일반분야	인공지능 분야
선정규모	30개팀 내외	20개팀 내외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팀당 0.7억원 내외,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직접 지원	사업화 자금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간접 지원	운영기업	· 운영기업의 기술, 테스트, 생산시설, 유통망 등 지원
	주관기관	· 성장 지원 프로그램(맞춤형 멘토링, IR 등) 지원

2 세부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사내벤처팀당 0.7억원 내외(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팀)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로 구성 * 사내벤처팀의 자기부담사업비는 운영기업이 협약체결 진행 시 납부 <p style="text-align: center;"><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운영기업 유형</th> <th rowspan="2">정부 지원사업비</th> <th colspan="3">운영기업 자기부담사업비</th> <th rowspan="2">합계</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h>소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대기업</td> <td>100,000,000</td> <td>20,010,000</td> <td>46,690,000</td> <td>66,700,000</td> <td>166,700,000</td> </tr> <tr> <td>90,000,000</td> <td>18,000,000</td> <td>42,000,000</td> <td>60,000,000</td> <td>150,000,000</td> </tr> <tr> <td>80,000,000</td> <td>16,000,000</td> <td>37,300,000</td> <td>53,300,000</td> <td>133,300,000</td> </tr> <tr> <td>70,000,000</td> <td>14,010,000</td> <td>32,690,000</td> <td>46,700,000</td> <td>116,700,000</td> </tr> <tr> <td>60% 이하</td> <td>30% 이상</td> <td>70% 이하</td> <td>100%</td> <td>100%</td> </tr> <tr> <td rowspan="5">중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td> <td>100,000,000</td> <td>7,500,000</td> <td>17,500,000</td> <td>25,000,000</td> <td>125,000,000</td> </tr> <tr> <td>90,000,000</td> <td>6,750,000</td> <td>15,750,000</td> <td>22,500,000</td> <td>112,500,000</td> </tr> <tr> <td>80,000,000</td> <td>6,000,000</td> <td>14,000,000</td> <td>20,000,000</td> <td>100,000,000</td> </tr> <tr> <td>70,000,000</td> <td>5,250,000</td> <td>12,250,000</td> <td>17,500,000</td> <td>87,500,000</td> </tr> <tr> <td>80% 이하</td> <td>30% 이상</td> <td>70% 이하</td> <td>100%</td> <td>100%</td> </tr> <tr> <td rowspan="5">연구기관</td> <td>100,000,000</td> <td>-</td> <td>25,000,000</td> <td>25,000,000</td> <td>125,000,000</td> </tr> <tr> <td>90,000,000</td> <td>-</td> <td>22,500,000</td> <td>22,500,000</td> <td>112,500,000</td> </tr> <tr> <td>80,000,000</td> <td>-</td> <td>20,000,000</td> <td>20,000,000</td> <td>100,000,000</td> </tr> <tr> <td>70,000,000</td> <td>-</td> <td>17,500,000</td> <td>17,500,000</td> <td>87,500,000</td> </tr> <tr> <td>80% 이하</td> <td>0%</td> <td>100%</td> <td>100%</td> <td>100%</td> </tr> </tbody> </table>	운영기업 유형	정부 지원사업비	운영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합계	현금	현물	소계	대기업	100,000,000	20,010,000	46,690,000	66,700,000	166,700,000	90,000,000	18,000,000	42,000,000	60,000,000	150,000,000	80,000,000	16,000,000	37,300,000	53,300,000	133,300,000	70,000,000	14,010,000	32,690,000	46,700,000	116,700,000	60% 이하	30% 이상	70% 이하	100%	100%	중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100,000,000	7,500,000	17,500,000	25,000,000	125,000,000	90,000,000	6,750,000	15,750,000	22,500,000	112,500,000	80,000,000	6,000,000	14,000,000	20,000,000	100,000,000	70,000,000	5,250,000	12,250,000	17,500,000	87,500,000	80% 이하	30% 이상	70% 이하	100%	100%	연구기관	100,000,000	-	25,000,000	25,000,000	125,000,000	90,000,000	-	22,500,000	22,500,000	112,500,000	80,000,000	-	20,000,000	20,000,000	100,000,000	70,000,000	-	17,500,000	17,500,000	87,500,000	80% 이하	0%	100%	100%	100%
	운영기업 유형			정부 지원사업비	운영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합계																																																																																
		현금	현물		소계																																																																																			
	대기업	100,000,000	20,010,000	46,690,000	66,700,000	166,700,000																																																																																		
		90,000,000	18,000,000	42,000,000	60,000,000	150,000,000																																																																																		
		80,000,000	16,000,000	37,300,000	53,300,000	133,300,000																																																																																		
		70,000,000	14,010,000	32,690,000	46,700,000	116,700,000																																																																																		
		60% 이하	30% 이상	70% 이하	100%	100%																																																																																		
	중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100,000,000	7,500,000	17,500,000	25,000,000	125,000,000																																																																																		
		90,000,000	6,750,000	15,750,000	22,500,000	112,500,000																																																																																		
		80,000,000	6,000,000	14,000,000	20,000,000	100,000,000																																																																																		
		70,000,000	5,250,000	12,250,000	17,500,000	87,500,000																																																																																		
		80% 이하	30% 이상	70% 이하	100%	100%																																																																																		
	연구기관	100,000,000	-	25,000,000	25,000,000	125,000,000																																																																																		
90,000,000		-	22,500,000	22,500,000	112,500,000																																																																																			
80,000,000		-	20,000,000	20,000,000	100,000,000																																																																																			
70,000,000		-	17,500,000	17,500,000	87,500,000																																																																																			
80% 이하		0%	100%	100%	100%																																																																																			

운영기업 유형	정부 지원사업비	운영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합계
		현금	현물	소계	
중소기업	100,000,000	3,400,000	7,800,000	11,200,000	111,200,000
	90,000,000	3,000,000	7,000,000	10,000,000	100,000,000
	80,000,000	2,700,000	6,300,000	9,000,000	89,000,000
	70,000,000	2,340,000	5,460,000	7,800,000	77,800,000
	90% 이하	30% 이상	70% 이하 10% 이상	100%	100%

- *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간 비율에 따라 세부금액은 변동 가능
- ** 현물은 사내벤처팀 및 운영기업의 사내벤처팀 및 지원부서 소속 인력의 인건비, 운영기업이 사내벤처팀에 지원하는 사무실 임차비 및 보유 기자재 등으로 계산
- *** 운영기업 중 사내벤처팀을 신청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운영기업 참여 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 가능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
	여비	• 신청자(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신청자(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신청자(예비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사내벤처팀 지원 프로그램 제공	
	유형	프로그램 예시
	① BM 수립	BM 발굴, 팀 빌딩, BM 고도화
	② 아이템구현	MVP 제작, 시장검증, 멘토링
	③ 투자유치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④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사내벤처팀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26.3.6.) 기준 사내벤처팀장(대표자)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준일 : '26.1.22.)
 - ※ '26.1.23. 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경우 신청 불가
 - 운영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

※ 사내벤처팀 신청 시 운영기업 요건

- **운영기업** : 대·중견·중소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세부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 **근로자 수** :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25.12.31. 기준)

구 분	세부 기준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기관

- 운영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기업의 사내벤처팀도 신청 가능
 - * 단, 운영기업에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관계 기업에 한함
- **사내벤처 운영 규정** : 사내벤처팀의 분사창업 지원을 위한 소속 임직원의 인사·급여·복무·보상, 추진체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보유하여야 함
- **자기부담사업비 납부** : 사내벤처팀에게 총사업비 구성 비율에 따른 자기부담사업비 납부
- **운영기업 인력 배정** :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 2인 이상 배정

□ 자격 예외 요건

- 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 '26.3.6.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불가)
- 다만,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의 제품·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 외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신청 불가

② 사업 공고일 기준 '26년('26.2.4.~3.6.)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년 이전('25.12.31.)에 ①폐업(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②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부도·파산의 경우 2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별첨 4\] 이종·동종 구분 기준 내용 참고](#))

※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3]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⑫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인 자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 3. 12.(목) ~ 3. 30.(월), 16:00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 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26.3.30.(월), 16시)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5]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 ① **반드시 신청자(사내벤처팀장)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신청자가 일반 **예비창업패키지(일반, 특화[여성·소셜벤처]와 특화(사내벤처)에 중복 신청한 경우, 특화(사내벤처) 신청·접수 내역만 유효 처리**
-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아이폰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 각자 또는 공동대표의 경우, 신청자 외 대표의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사내벤처팀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신청자(사내벤처팀장)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 운영기업 담당자 배석	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6.4월 초	'26.4월 중	'26.4월 중	'26.4월 말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자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 위배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 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서류평가 가점 >

구분	대상자	점수	제출 서류
가점 (최대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 졸업생 - 인공지능대학원(10개) : 고려대,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KAIST -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9개) :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충남대, 한양대 ERICA 	2점	[별첨 2] '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참고

구분	대상자	점수	제출 서류
가점 (최대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테크 분야 창업 예정인 자 (클린테크) 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탄소에너지 (카본테크) 탄소포집, 공정혁신, 모빌리티 (에코테크) 자원순환, 폐기물절감, 업사이클링 (푸드테크) 대체식품, 스마트식품, 애그테크 (지오테크) 우주기상, 기후적응, AI-데이터금융 * 기후테크 세부유형(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3년) 	1점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벤처팀장(대표자)이 중장년(40~50대)이며 운영기업에 10년 이상 재직경험을 보유한 경우 * 신청자 연령은 공고일 기준 	1점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사기업과 업무 협력 실적을 보유한 운영기업의 사내벤처팀 - 운영기업과 분사기업 간 투자, 업무 협력(구매·라이센싱) 등 협력 실적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24~'26.3.6.) * 가점 구간 : [1점] 0.5억원 미만 / [2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3점] 1억원 이상 	1~3점	업무 투자·협력 실적

* 가점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사업계획서에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필요성, 개발 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사내벤처팀장(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운영기업의 협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사내벤처팀장(신청자) 및 운영기업 담당자(1명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내외 (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또한, 운영기업 담당자(1명 이상)가 배석하여 사내벤처팀 지원·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필요

* 사내벤처팀의 성공적인 시제품 제작 및 분사 지원을 위한 운영기업 내용 포함

- 우선 선정 대상자도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선정 통보된 사내벤처팀장은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 (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예비창업패키지(특화)」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제출 요청일은 선정 통보일을 의미
-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가능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 (TIPS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화 ALL-In-One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다만,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총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사내벤처팀을 선정하고, 정부지원 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사내벤처팀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사내벤처팀은 신청 시 선택한 지원분야(일반 또는 인공지능)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인공지능 분야의 유망 사내벤처팀 발굴을 위해 평가 성적이 우수함에도 분야별 규모 제한으로 탈락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야별 규모조정 가능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내벤처팀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사내벤처팀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사내벤처팀 보유역량, 운영기업 협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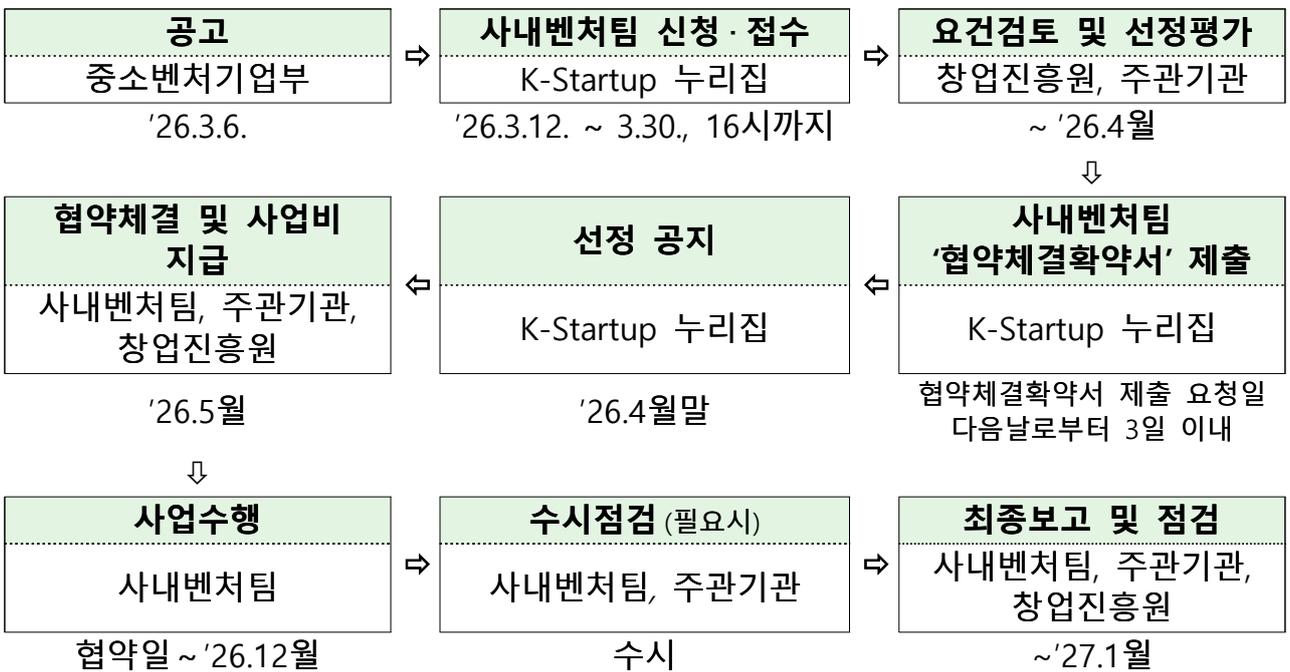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사내벤처팀장 및 팀원이 보유한 기술역량과 노하우, 운영기업의 지원·협력방안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사내벤처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사내벤처팀장이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협약체결) 불가. 단, '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사내벤처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사내벤처팀장(신청자)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내벤처팀장(신청자) 및 운영기관 담당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다만,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 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기업창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사·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내벤처팀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내벤처팀장(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사내벤처팀장이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사내벤처팀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사내벤처팀장)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 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내벤처팀은 팀장을 대표자로 하여 협약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분사(Spin-Off)*를 완료하여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기준에 따라 창업

- 단, 투자유치 등 투자조건 협의·조정으로 법인설립(분사) 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투자기관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협약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조정 가능
- 선정자의 운영기업은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내벤처팀이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사내벤처팀장(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한 선정자의 경우, 협약 종료일 후 2개월 이내 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단, 투자유치 등 투자조건 협의·조정으로 법인설립(분사) 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투자기관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협약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조정 가능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기업 유지 미이행 시, 창업진흥원 창업지원 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여

7

기타사항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사업 주관기관 담당자

문의처	전화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070-8833-1581

붙임 1**지원 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붙임 2**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 예비창업패키지 (생애최초·공공기술 창업사업화 포함)
- 초기창업패키지 (실험실특화 포함)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
 -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예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 단,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창업성공패키지 딥테크창업사관학교
- 창업중심대학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2023년)

붙임 3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3	·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4	· 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5	·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6	·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7	· 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8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9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10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11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티프스)	중소벤처기업부
12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3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4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5	· 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6	·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7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8	·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0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1	·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	·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3	·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4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5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6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7	·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	·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0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1	·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32	·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33	·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34	·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5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6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7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평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창업진흥원 누리집) <https://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